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680 판결 [건물철거, 토지인도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시멘트블럭조 단층 주택 55.59㎡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단층 화장실 1.56㎡를 각 철거하고, 위 각 건물 부분 토지 57.15㎡를 인도하며, 2020. 8. 19.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한편,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가 그 요건사실을 명백히 주장, 증명한 바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건물은 지붕조차 존재하지 않는 폐허 상태로서 법정지상권 제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스러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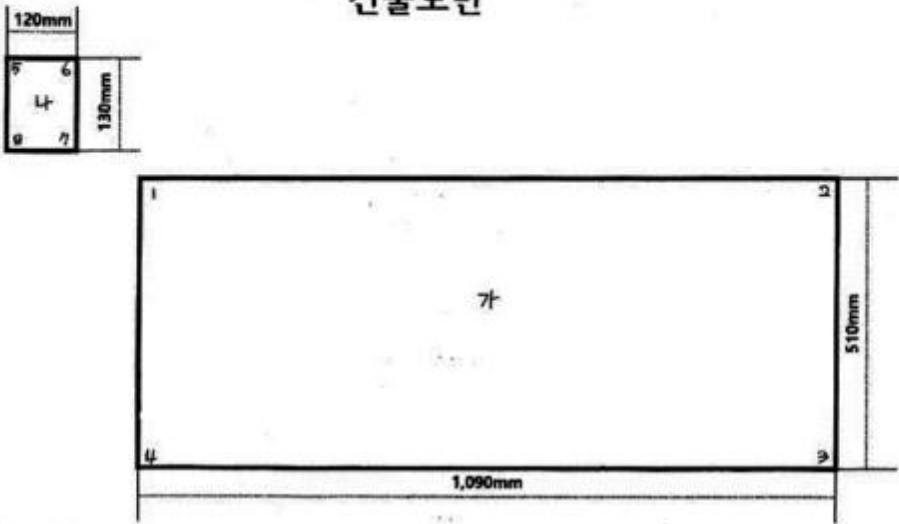
판사 강지성

별지목록

양양군

전 1,653㎡

건물도면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B의 소유였던바, 원고가 2020. 8.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 2020. 8. 19. 접수 제9142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지어진 별지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B와 소외 남편 C은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경매당시 제시된 건물이었던 별지도면표시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별지도면표시 건물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피고는 이 건물을 건축할때부터 무허가로 건축을 하였고 현재 건물은 지붕도 모두 없어지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 폐허가 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합의점을 찾고자 수차례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부분과 (나)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둘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0년 8월 19일부터 전시 (가)(나)부분의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금1,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고자 이 건 소를 제기합니다.

